

6-6.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특약

이 상품은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약정이율을 변경하여 적용하므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으나, 반대로 금리가 하락 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.

제1조【적용범위】

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(이하 "이 저축" 이라 한다)의 거래에 있어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, 적립식예금 약관,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【계약기간】

이 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년 단위로 정하며 계약기간이 30년 미만일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1회에 한 해 가능하다.

제3조【저축방법 및 저축한도】

이 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분기 3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원 이상 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.

제4조【약정이율 적용】

이 저축은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는 가입일 당시 우체국에 게시한 약정이율을 적용하며, 3년 경과시부터 3년경과 시점의 우체국에 게시한 이 저축의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이후 이율 변경시에는 이율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.

제5조【중도해지】

이 저축을 신규가입 후 5년 경과하기 전에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우체국은 가입일 로부터 해지요청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우체국에 게시한 중도 해지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.

제6조【예치한도 변경】

이 저축의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우체국에서 신청하여야 한다.



제7조【비과세 처리】

이 저축의 만기를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전액 비과세처리한다. 단, 이 저축의 만기 후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의거 원천징수한다.

제8조【기타사항】

- ① 원칙적으로 명의변경 및 양·수도는 불가하나,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 및 착오에 의한 경우는 가능하다.
- ② 이 저축의 중도 분할해지는 불가능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하다.
- ③ 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, 시행규칙의 변경 시해당 법령에 따른다.

부 칙

- ① 이 특약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제2조(계약기간)의 만기연장 및 제6조(예치한도 변경)의 한도 증액은 2013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.